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조민행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

The Issues in the Revised National Certification of Sports Coaches

Min-Haeng Cho
Department of Sports & Leisure, Daegu University

요약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11(Fostering of certified sports leaders) and Article 11-2(Designation, etc. of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ions and training institutions) that wer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to implement the acts, July. 4, 2014. The national certification that was introduced to promote job career and to effectively manage human resource is forming a strong link with the education and labor market. Given the numerous human resources majoring in sports and exercise of the higher education and as they are providing them with professionalizatio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8-2(offering certification for any person aged over 18 years old) should be omitt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12(Training course) that requires 90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vised to a few hours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very year.

Keywords : Higher Education, National Qualification, Labor Market, Professionalization, Sports Coaches

이 연구는 201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Haeng Cho(Daegu Univ.)

email: cho6447@hanmail.net

Received June 15, 2020

Revised July 15,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산기술 발전단계인 산업혁명이 1차산업을 시작으로 4차산업에 이르고 있지만, 이 시기마다 변동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이 교육과 제도 변화다[1].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다. 비록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특수한 지식과 기술 수행을 위한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 전문적인 실무에 대한 수행기준과 체계 유지, 사회와 상호작용이라는 요소가 전문성을 설명한다[2-6]. 전문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각 직업군마다 추구하는 목표 지향점이 되기에 체육 및 스포츠분야도 노동구조 변화 속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를 보완해 왔다.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체육 및 스포츠전공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제도화 과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 양성)에 의거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양성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해 연수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7]. 제도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의 하나가 기술혁신과 사회발전에 적용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제도다[8].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직종이 노동시장에 전문직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가지며[9], 체육지도자 국가자격도 전문성을 나타내는 신호기능을 발휘하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9]. 더욱이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는 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 직업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10], 국가자격제도는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일반대학)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정부가 추진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역량을 심어주는 규범화된 인적자원 관리의 틀이 되는 법률 내용이 되어야 한다. 산업발달로 각 분야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직업전문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있다[11]. 즉, 자격 취득자 요건, 자격 취득과정, 자격부여 과정 등의 전문화 과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성 습득이 체계화되

어야 하고, 전문성 습득자가 해당 업무나 영업활동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직업전문성을 구축하는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체육 및 스포츠분야도 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와 양성된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 직업전문성으로 자리 잡도록 이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체육계열 인적자원의 고등교육기관 과 노동시장 진입의 연계성 및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률내용이 되도록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주요 개정 내용과 이유,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전공인력 현황 분석,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쟁점 및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2.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주요내용과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현황

2.1 체육지도자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 9월 17일 제정되어 체육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동법 제10조(지도자 양성)가 규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후 44차례에 걸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 전부개정, 또는 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7월 7일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4항(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 동법 제11조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1항과 3항(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12].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학교체육교사,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해오면서 발생했던 미비한 문제점으로 단순화된 자격종류를 세분화하는 것, 연수과정을 강조할 필요성,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자격취득에 있어 규제가 될 수 있는 학력 및 전공 철폐 등 고등학교졸업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요건을 없앴다는 것이 개정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14년 7월 7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자격종류의 세분화와 학력 및 전공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의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 2항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는 부분개정이다. 또한 자격 종류와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는 전문개정을, 제9조의 2(건강운동관리사), 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 5(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은 본조신설을 통해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을 규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정 내용의 두 번째는 자격검정에 관한 규율이다. 이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의 전문개정,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본조신설,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본조신설,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본조신설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중에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의거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가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내용의 마지막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 동령 제11조(연수과정)가 전문개정 되었으며,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가 본조 신설되어 스포츠지도사 등급별 및 종류별 연수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4항의 개정 및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본조 신설로 체육지도자의 종류, 등급,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개정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및 동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관련학 전공자 양성 현황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인력의 증가를 엿볼 수 있다. 일례로 2008년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스포츠산업경영관리사)를 양성하는 관련학과는 전문대학의 184개학과를 포함한 전국에 234개 학과에 총 47,613명이며, 이 인원은 전국대학생 1,859,000명 대비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계열학과와 인력현황에도 변화가 있다. 교육통계에 의하면[14], 2011년도 전문대는 147개교에서 체육계열학과 수는 274개이며 모집정원은 6,864명이었으며, 일반대학은 183개 학교의 469개 학과에서 12,716명을 모집하였다(Table 1, Table 2).

2015년도에는 전문대 138개 학교의 241개 학과에서 4,649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대학 189개 학교의 481개 학과에서 11,362명을 모집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전문대학 137개 학교의 190개 학과에서 4,118명을 모집하였고, 일반대학 191개 학교의 467개 학과에서 9,860명을 모집하였다.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2011년 대비 각각 2,680명과 2,856명이 줄어들었으나, 고등교육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 14,048명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를 모집 양성하고 있다.

Table 1. Admission Number and Sports-Related Departments of Junior Colleges

Years	Number of Junior Colleges	Number of Departments	Number of Students	Admission Number	Number of Applicants	Others
2019	137	190	13,559	4,188	27,187	Dance 4 Colleges
2017	138	219	14,791	4,148	19,762	Dance 3 Colleges
2015	138	241	17,365	4,649	23,143	Dance 5 Colleges
2013	140	244	20,016	5,491	23,338	Dance 4 Colleges
2011	147	274	22,459	6,868	26,729	-

Table 2. Admission Number and Sports-Related Departments of Colleges

Years	Number of Junior Colleges	Number of Departments	Number of Students	Admission Number	Number of Applicants	Others
2019	191	467	61,361	9,860	86,110	Including 56 Dancing Dept.
2017	138	491	62,893	10,406	78,606	Including 60 Dancing Dept.
2015	189	481	65,697	11,362	69,776	Including 56 Dancing Dept.
2013	188	494	68,235	12,019	64,061	Including 57 Dancing Dept.
2011	183	469	69,998	12,716	67,351	Including 57 Dancing Dept.

또한 체육 및 스포츠부문의 자격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2018년도 자격종류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15], Table 3과 같이 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790명,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8,925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185명, 노인스포츠지도사 1,858명 등 총 14,686명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년간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 인원대비 체육지도자의 인적자원 양성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계열전공자의 입학자원 현황을 단순히 살펴보다라도 인적자원의 공급이 충분함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약 75,000명인 체육계열전공자의 전체인원을 고려하면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원은 공급 과잉임을 알 수 있다.

3.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3.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은 전문화 및 직업전문성 훼손

2014년 7월 7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부분개정이다. 개정

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동령시행규칙은 고등교육기관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 스포츠 및 체육관련학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전문화, 전문성 및 전문직 관점에서 쟁점이 된다.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규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체육지도자는 1986년 한국사회체육진흥회의 사회체육연수원에서 2급 177명이 양성되기 시작하였다[13]. 이후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령시행규칙이 몇 차례의 전문 개정 또는 부분 개정 등으로 사회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기간중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계열은 성장해왔다. 일례로, 2019년도에는 전문대학 137개 학교의 190개 학과에서 4,118명이, 일반대학 191개 학교의 467개 학과에서 9,860명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을 전공하는 인원이 한해 14,048명으로 체육지도자로서의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이 체계적인 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10]. 특정분야의 전문성

Table 3. Certified Number of Sport Coaches

Classifications	Fitness Trainer	1 Level Elite Coaching	2 Level Elite Coaching	1 Level Sports Coaching	2 Level Sports Coaching	Youth Sports Coaching	Older Sports Coaching	2 Level Specialized Sports Coaching	Total	Applicants
2018	94	41	1,790	245	8,925	1,185	1,858	548	14,686	33,339
2017	181	66	1,173	262	6,933	1,258	1,846	478	12,197	30,542
2016	285	78	2,771	277	9,207	1,634	1,922	574	16,748	26,090
2015	234	70	1,451	185	6,342	1,973	1,746	463	12,464	18,249

은 해당분야의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16-18], 이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문화 과정이다[17, 19].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체육계열학과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는 전문화 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에서 능력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상당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제거 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분야의 전문성을 훼손함은 물론 이를 전공하는 전공자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자원관리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되는 조항이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는 전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성 제고의 근본적인 목적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교육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전문인력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하고 있고, 이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화 과정에 의한 인적자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자격제도를 지원하는 법의 규율이 인적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국가자격과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의 목적과 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고등교육의 전문성교육이 운영됨으로 보수교육으로 개정되어야 함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부터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까지 규율되어 있으며, 핵심내용은 필기시험을 합격한자는 실기 및 구술시험에 응시 및 합격을 해야 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자는 연수과정을 이수해야만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연수과정)에서 제11조의3(연수계획)까지 그리고 동령시행규칙제12조(연수과정)에 규율되어 있는데,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250시간 이상,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120시간 이상,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90시간 이상,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은 20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종류와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수시간을 90시간 이상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수과정은 인력양성을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제한적 성격의 연수과정에 의한 것으로 학력 및 전공에 상관없이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다. 이와는 다르게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기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문화 과정이다. 전문대학의 졸업 최저 이수 학점이 80학점이며, 일반대학의 체육계열 전공자는 졸업 최저 이수 학점이 130학점으로 취득 기간은 2년에서 4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전문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물론 지도자로서 자질 함양을 하게 된다.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습득하는 체육계열 전공자에게 연수과정을 90시간 이상 설정한 것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연수과정은 필요하나 단발성의 연수과정이 아닌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해당분야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 그리고 최신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간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 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적시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지원자의 주요 인력공급이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전공자로 이들이 핵심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수에게 면제 조항을 규율한 것은 특혜가 된다. 연수면제 대상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습득하였는가라는 관점이 사회적 전문성과 통용성을 제공하기에 특정대상에게 연수과정을 면제시키는 조항은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의 정체성을 약화시킨 조항이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의 법률로써 전문화에 의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검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자격 제도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과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과 연수과정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및 전문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

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J. Hur, "Impacts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Labor Workplaces", *Labor Review*, pp. 62-71, March 2017.
- [2] J. A. Kim, H. S. Oh, "A Study on the Components Development of PDs' Expertise", *Korea Research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0, no. 3, pp. 11-34, 2007.
DOI : <http://dx.doi.org/10.36907/krivet.2007.10.3.111>
- [3] Y. H. Lee, S. G. Han, J. H. Chung, K. H. Kim, "Work Values and Vocational Ethics of Korean(2008) - Work Ethics and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8.
- [4] R. R. Hoffman, "How can expertise be defined? Implications of research from cognitive psychology". in Williams, R., Faulkner, W., & Fleck, J.(1998). *Exploring expertise: Issues and perspectives*, pp. 81-100, 1988.
- [5] D. K. Simonton, *Creative expertise: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227-254 in Ericsson, K. A.(Ed). *The road to excellence: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in the arts and sciences, sports, and game*. Mahwah, NJ: Erlbaum, 1996.
- [6] R. Swans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ts underlying theo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 4, no. 3, pp. 299-312, 2001.
DOI <https://doi.org/10.1080/13678860110059311>
- [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accessed Nov. 5, 2019)
- [8] D. I. Lee, "The issues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Korea Research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2.
- [9] M. H. Cho, W. D. Kwun, "Are the National Certifications of Sport and Recreation Moving into Profess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 Management*, vol. 16, no. 1, pp. 15-25, 2011.
- [10] M. H. Cho, "A Review of Professionalization and National Certification relating to Physical Education & Sport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20, no. 4, pp. 161-174, 2016.
DOI : <https://doi.org/10.15831/JKSSPE.2016.20.4.161>
- [11] H. S. Kim, M. S. Kim, "Issues in Certification System of Professional Job", *Korea Research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3
- [12]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Implement of the Revised National Sport Coaching Certification from 2015",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July, 2013.
- [13] M. H. Cho, "A Review of Sport Certification for Professionalization of Sport Coach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3, pp. 51-61, 2008.
- [1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ensus of Educational Statistics, [Interne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2&menuSeq=3894&itemCode=02&language=en>
(accessed Sept. 13, 2019)
- [15] Sport Coaching Certification Institute, Statistical data of Sport Coaching Certification [Internet]. Sport Coaching Certification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www.insports.or.kr/ouncel/totalList.do>
(accessed Sept. 20, 2019)
- [16] H. S. Oh, J. A. Kim, "Critical Research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Expertise Research",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vol. 9, no. 1, pp. 143-168, 2007.
- [17] K. C. On, "An analysis of the features of expertise and their roles in intui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4, no. 3, pp. 53-85, 1996.
- [18] T. Valkevaara, "Exploring the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expertise in HRD: Analysis of four HR developers' work histories and career storie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26, pp. 183-195, 2002.
DOI: <https://doi.org/10.1108/03090590210422067>
- [19] F. Geels,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vol. 33, pp. 897-920, 2004.
DOI: <https://doi.org/10.1016/j.respol.2004.01.015>

조 민 행(Min-Haeng Cho)

[정회원]



- 2000년 5월 :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체육학박사)
- 2004년 7월 ~ 2006년 2월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교육, 스포츠관리